

2021년도 4/4분기

#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2. 2. .

감사위원회

# 1.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 □ 감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관리 및 회계처리 등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시청 직원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기여

## □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행정국(인력개발과) 등
- 감사기간 : 2021. 3. 5. ~ 4. 16.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 (공익감사단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8. 1.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업무

## □ 감사 중점 사항

- 보육교직원 채용, 교사처우현황 및 CCTV 등 시설관리
- 회계처리(물품구매 등), 보육아동 관리, 아동학대예방활동 관련
- 관련 부서 지도점검, 민원처리 등 적정여부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시정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추급)						
18		3 (8,900)	-		3	2 (4,215)	-	1 (4,685)	1	4	-	1	9	-

## □ 총 평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 자녀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여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2017. 10월부터 A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원장을 포함한 총 43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2021. 1월 현재 160명의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 수탁사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총1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수탁사무운영 분야 지적사항
- A재단은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원장에게 재위탁하는 성격의 ‘위임계약’ 체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 어린이집 운영 자문·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교직원 연수와 관련 없는 ‘교직원 연수·연구비’에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청구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분기별 정산보고를 미보고하거나 보고기한을 미준수하였음.

○ **일반관리 등 운영 분야 지적사항**

- 어린이집 운영규정은 투명한 예산집행 관련 조항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 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 어린이집 비품에 대해 연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인력개발과는 어린이집 비품관리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히 하였고,
- 경조사비는 규정상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총 5건(5명)에 대해 1건당 2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1인당 15만원씩 총75만원 초과 지급하였으며, 관내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준없이 임의로 여비지급하고 여비지급 시 일부 출장명령서 및 출장복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미작성하였음.

○ **보육교직원 채용 등 인사 분야 지적사항**

- 어린이집 원장 채용 시 공개채용규정을 위반하였고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기간 등을 미준수 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수당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수당을 총36명에게는 56건 4,685천원 직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과소지급하고, 총 4명에게는 28건 3,465천원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 등 과다지급하였으며,
- 시청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정도에 비해 급여·수당 등 처우가 취약하여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육 관련 분야 지적사항**

- 보육아동 급식은 어린이집 내 직접조리원칙이며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대체급식 및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식단표 등에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하였으며,

- 아동인권선임교사의 아동학대예방활동 부재 및 일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미실시하였음.

○ 회계 관련 분야 지적사항

- 급식비 및 공공요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하거나 업무소홀로 부적정하게 지출하고, 편성된 세출예산과목의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나 수용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교재교구비 등으로 잘못 지출하였으며, 지출행위시 지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일부 미첨부하였고,
- 어린이집 현장학습 시 점심식대를 보호자로부터 수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수납하여 지출하였으며, 보호자에게 수납하는 특별활동비를 일부 미정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에게 미보고하였으며, 저녁급식비를 예산에 미편성하여 지출하고 일부 미정산 하였음.

○ 계약 및 시설 관련 분야 지적사항

- 추정가격 6천만원 이상인 청소용역은 일반공개경쟁계약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처리하는 등 계약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 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비상계단 층간 높이 기준인 16cm 보다 높은 17cm 이상), 안전관리 시설 관리 미흡(위험물건 보관창고 잠금장치 미시건,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미설치 및 전선줄 관리 영유아에 노출), 성인 사용 공간 영유아 출입관리 미흡(ex. 엘리베이터 앞 영유아 접근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일부 어린이집 시설이 기준에 미충족하였음.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2. 2019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

### □ 점검 목적

- 사업추진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함

### □ 추진내용

- 점검대상 : '19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사업(22개 사업)
  - 미의뢰 내역 : 계약업무 5건, 보조사업 14건, 안전관리 3건
  - ※ 총 대상사업(26개 사업) : 미의뢰(22건), 비대상(3건), 미의뢰 제외(1건)
- 점검기간 : 2020. 6. 1.~6. 10.(기간 중 8일)
- 점검인원 : 일상감사팀장 등 5명
- 점검내용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 점검 중점

-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미의뢰 사유
- 일상감사 대상사업 업무 추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민원유발 여부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타 (경고)
총건 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2	3	0		0 (0)	0 (0)	- (0)		2 (3)					

## □ 총 평

- 2019년 하반기 일상감사 대상사업 5,037개 사업 가운데, 미의뢰 실태점검 대상 26개 사업을 추출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 26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101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 22개 사업(계약 5, 보조사업 14, 안전관리 3)
  - 나머지 4개 사업은 일상감사 비대상 및 의뢰 완료한 것으로 확인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는 사업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 계약업무는 경쟁 입찰 의뢰 건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사업 부서에 반려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미의뢰 함.
  - 보조사업은 신규 담당자의 일상감사 업무규정 미숙지로 인해 미의뢰 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의 관련 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규정 미이행 및 특혜 사례 발생
  - 5개 사업(계약업무 1, 보조사업 4)에서 관련 규정 미이행 사례 발견.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 조치하여 차후 유사 사례 방지 및 대상기관에는 자체 교육 및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교육 필요
  - 업무 미숙지로 미의뢰한 기관(부서)은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일상감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안내) 실시하고,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 조치하여 차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이 국비매칭과 시비사업이 상이함. 이에, 사업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서(가 담당관)에 개선대책 마련 요구

### 3. 서울교통공사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및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 등 주요 부진사업의 지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교통공사
- 감사기간 : 2020. 12. 10. ~ 12. 18.(기간 중 7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3명
- 감사범위 :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및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 전반

#### □ 감사중점

- 사업 추진시 기관장 등의 업무회피, 리더십 부재 등 지연 사유 규명
- 규정 및 방침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및 기타 애로사항·개선사항 파악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0	8	0	0	3	3	0	0	3	1	0	0	2	1	0
			(0)	(5)	(0)	(0)	(0)	(0)	(2)	0	0		(1)	(0)

※ 고발(수사의뢰) 및 문책요구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비공개

## □ 총 평

서울교통공사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7. 5. 31.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설립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 지연 등 총1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 관련

- 공사는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는데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사업을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타제품을 더 효율적이라고 사장에게 허위 보고하여 검토를 사유로 또다시 지연하는 등 시민 피해 가중

○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사업' 관련

- 공사는 당초 특정기술(세라믹 필터)로 선정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담당 처장이 교체된 이후 계약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사유로 10개월 이상 지연하는 등 시민 피해 가중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당시 업무담당 처장, 부장 및 과장에게 각 중징계, 팀장 및 부장에게 각 경징계 조치 및 사장에게 기관장경고 조치(조치 완료)

#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서울교통공사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 지연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가중	시정요구	<p>①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2020. 4. 28. 개최한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및 2020. 10. 19. 체결한 신기술 사용협약서 내용에 따라 2020년분 64개소를 포함하여 총173개소(공사 예산 제약 요인에 의하여 변경 가능)에 대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p> <p>② 2019년분 45개소 설치사업 추진시 조달청 계약 설계에 누락된 설치 공종(붙임 2 '전기집진기 설치 공종 누락 내역' 참조)을 포함하여 조달청에 재의뢰 또는 수정의뢰 등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p> <p>③ 2020. 11. 25. (주)A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내규에 따라 정식으로 접수 및 통보 등 처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p> <p>※ 당시 업무담당 팀장 및 부장에게 각 경징계 조치</p>	<p><b>조치 중</b></p> <p>※②번 및 신분상 조치 완료</p>
서울교통공사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사업 고의 지연	통보	<p>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의 일환인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교부된 2019년도 및 2020년도 국비보조금(110억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p> <p>② 2020. 4. 17. “2020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사장-263)”에 따라 역사 환기 급기구에 습기에 강하고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뛰어난 세라믹 허니콤 구조 필터를 설치하여 PM2.5 미세먼지 90% 이상 차단 등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p> <p>※ 당시 업무담당 처장, 부장 및 과장에게 각 중징계, 사장에게 기관장경고 조치</p>	<p><b>조치 중</b></p> <p>※신분상 조치 완료</p>

## 4.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관련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조선일보 등. '21.3.5)
  - “SH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된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인 것”(◆◆◆)
  - “서울시가 □□ △△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 소송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 추진내용

- 대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감사기간: '21.4.14.(수)~4.20.(화)(기간 중 5일)
- 감사인원: □□감사1팀장 등 3명
- 감사범위: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19.7.25) 대응관련 업무 전반

### □ 감사중점

- 해당 소송 업무추진 절차 적정성 여부
- 소송관련 문서보관 적정성 여부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3	6		0 (0)	0 (0)	0	0	(0)	2 (6)	0	0	1	0 (0)	

## □ 총 평

### 【 요 지 】

- 이 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관련자료 확인 등 종합 감사결과,
  - 소송보조자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등을 수행하며,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소송보조자는 ○○○과의 소송에서 □□□에 정보공개 비공개 통보했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응하면서
  - 공사 발주부서(가부)를 누락하여 설계, 시공(준공) 부서만 수신처로 지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과정에서 ○○단지 등 5개 단지 설계·도급내역서 등 문서 15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총 2건을 지적하여 '21. 10.월 현재 신분상 조치 1건 중 1건(6명) 완료, 보존기간이 장기인 서류를 다량 생산·접수하고 있어 실정에 맞는 서류관리 방안마련 등 행정상조치 완료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보조자는 법원에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제출 등을 수행하면서 공사 발주부서(나부)를 누락하여 설계, 시공(준공) 부서만 수신처로 지정하여 □□단지 등 ○개 단지 설계·도급 내역서 등 문서 15개를 제출하지 못해 소송업무 소홀로 서울시 신뢰도 저하를 야기함.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설계 및 설계변경의 경우 영구보관 및 3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사 가부는 △△단지 아파트건설공사 관련, 설계·하도급내역서 등을 98건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보존기간이 장기인 서류를 다량 생산·접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실정에 맞는 서류관리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
  -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 교육 실시하고 지적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

## 5.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불법 전대 등 무자격 입주자 관련 사항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 조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감사기간 : 2020. 10. 14.(수) ~ 11. 27.(금)(기간 중 33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관련 처리한 업무 전반

### □ 감사중점

- 무자격자 배제 등 입주자 선정 실태
- 불법 전대 확인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실태
- 입주 후 자격 유지 확인 등 입주자 사후관리 실태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실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발굴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1	12	0	0	2	0	0	0	0	6	0	0	3	0	0
			(0)	(2)	(0)	(0)	(0)	(0)	(10)	0	0		(0)	(0)

## □ 총 평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89. 2. 1.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택지개발공급과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불법전대자 방치 등 총11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전대 의심 보고 받고도 조사 소홀로 불법전대자 방치’ 관련(조치 중)
    - 공사는 '17년 거주실태조사에서 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동생 거주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자체 종결처리
    -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에는 계약자의 동생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계약자는 동생이 소유하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조치완료)
    - 공사는 '18년 거주실태조사에서 분가세대는 전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그런데 계약자는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고, 계약자의 아들 세대가 '18년 부터 분가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등 부정 입주자로 확인
-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당시 업무담당자 각 경징계 조치 및 1,2차 감독자 주의 조치(완료)

## 6.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21. 6. 16. 제기된 고충민원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A과 및 B과)
- 감사기간 : 2021. 6. 30.(수) ~ 7. 9.(금)(기간 중 8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3명
- 감사범위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강서구에서 처리한 업무 중 법령 위반 사항

※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 등 포함

### □ 감사중점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변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
- 부분준공 처리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 □ 총 평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 강서구는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조합 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관련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강서구는 '17. 8. 3. 부분 준공인가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보상금 4억원을 예치하도록 의무부과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
- 그 결과 강서구는 법적 근거 없이 토지보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금 예치를 강요받았다는 민원을 야기하게 하는 등 법치행정의 원칙 위배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토지보상금 4억원에 대하여 향후 사용 또는 반환 계획 등 자체해결방안 마련조치 (조치 중)

# 7.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 안전 위해요인 사전제거
- 시설물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성동도로사업소
- 감사기간 : '20.11.26.~11.27., '21.2.23.~3.9.(기간 중 15일)  
\* 시정 주요사업 실태점검 및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실시감사 중단('20.11.28.~'21.2.22.) 후 재개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관리중인 도로·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실태 및 '18년 이후 준공 또는 계약 시행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 감사중점

- 도로 포장공사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 적정 여부
-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이행 실태
-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의 품질 및 시공 실태
- 도로 방호책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상태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sup>1)</sup>	신분상 조치인원 <sup>2)</sup>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9	14	-		1 (1)	4			4	7 (13)			7		

1)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2)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 □ 총 평

-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중)인 도로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안전 등을 위한 유지관리, 품질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 방음시설 자재비 과다설계 및 품질시험 미이행, 복개구조물의 받침교체 부적정, 연간단가계약 도급액 범위내 준공처리제 미준수 등
  - 총 19건을 지적하여 2021. 10. 현재 신분상조치 14명, 행정상조치 18건 중 16건을 완료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방음벽 지주 및 프레임을 서울시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표준 강재보다 고가의 알루미늄 자재로 설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전면 강화접합유리에 대한 음향투과 손실 등 9개 항목의 품질시험 미실시
  - 특정자재업체에게 터널조명 설계를 임의 요청 및 제출받아 공사 발주하고, LED 등기구 자재구매를 위한 2단계 경쟁 시 이 업체의 제품 가격보다 높은 제품의 5개 업체를 제안요청대상자로 구성하여 이 특정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함
  - 복개구조물의 받침교체에 대해 기존 철근의 배근·위치 등의 확인없이 작업이 불가한 내용으로 설계하고, 기존 철근과의 간섭 등에 대한 구조검토 등 없이 설계 변경 및 시공하면서 교각부에 배근되어 있는 주철근 등을 간섭·절단 시공함
  - “연간단가 계약공사 도급액 범위내 준공처리제”의 준수없이 도급액의 10%를 초과하여 최소 30%에서 최대 233%까지 임의 증액·준공함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 관련업체(시공자, 설계자 등)는 관련규정에 따라 벌점, 고발 조치토록 하고 공사감독자 등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조치함
  -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8.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 감사배경 및 목적

- 행정사무감사('20.11.5.)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A·B·C·D·E시설(5개소)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A·B·C·D·E시설(5개소)

※ 지도·감독부서 : 市 자활지원과, 종로구(사회복지과), 중구(사회복지과), 용산구(사회복지과), 영등포구(사회복지과)

- 감사기간 : 2021. 4. 19. ~ 7. 15.(기간 중 45일간)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직원 3명(공익감사단 2명)
- 감사범위 : 2018. 1. 1.부터 현재 까지 관리·운영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2020.11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주요 지적사항〉

- ① 상품권 관리 소홀
- ② 방역업체와 수의계약 다수 체결
- ③ 종사자 복무위반, 후원물품 지도감독 소홀
- ④ 임대주택 불법거래 등 부실관리

-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및 수탁기관 관리(지도, 감독 등) 적정 여부 등

### 지적사항 총괄<sup>3)</sup>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모범	기관 경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34	0	0	0	0	1	0	0	1	19	1	6	7	0
			(0)	(0)	(0)	(0)	(0)	(0)					(0)

3) 현지 조치사항 총 5건, 업체 고발(2), 과태료 부과(2) 제외

## □ 총 평

□ 시의회 주요 지적사항인 ① 상품권 관리 소홀(미지급, 미서명 등), ② AA 법인(C시설)과 방역업체(◇◇◇) 간 수의계약 다수 체결, ③ 임대주택 불법거래 등 부실관리(월세 미납부 등), ④ 종사자 복무위반(C, A시설) 등을 감사한 결과,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 기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계약 체결 및 관리]

○ (D시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에도, 배전관공사와 배선공사가 포함된 총 2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나, D시설과 계약한 방역업체 ◇◇◇는 '20. 06.01.~08.31. 기간 중 주민 12명을 고용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음

### [임대주택 관리]

○ (B·C·D시설) 수탁자는 '임차형 저렴 쪽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을 정하여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징수한 수입금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수탁자가 산정기준도 세우지 않고 임의로 월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징수한 수입금을 市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료,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음

### [종사자 복무관리]

○ (B시설) 직원 채용은 법정 공고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해야 하나, '18년 4월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에 있어 공고 기간이 만

료되기도 전에 직원을 채용하였음

[공사 관리]

- (종로구) 계약상대자(△△건축사)가 작성·제출한 설계내역서와 준공도서의 주요 구조부분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시정지시나 보완통보 없이 적정하게 건축설계 용역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준공처리하였음
- 하자 담보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조서를 미작성하였고, 보수 요청 후에도 이행통지 결과에 대한 보수완료 확인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음

[지도·감독]

- (市 자활지원과) A시설과 D시설의 전용건물을 마련하며 이전하면서도 위탁사무와 재산의 범위를 반영한 협약서 변경 및 공증을 하지 않았고, 수탁자 재선정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음
-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고, 이월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A·B·C·D·E시설(5개소)의 세출결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월하였음

주요 모범사례로는,

○ [D시설] 무선인식 기술을 통한 회원관리 체계 개선

- 법인전입금을 통해 '19년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원물품 조서 작성 시 글자를 모르는 회원이나 고령 회원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으며, 조서 분실 등 위험이 현저히 개선됨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에 따른 업무 소홀, 업무처리 지침(매뉴얼) 부재, 지도·감독 미흡에 기인한 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고 현업 종사자의 정기적인

실무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市 주관부서(자활지원과)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임

# 9.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본 감사는 도시교통실의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설치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함.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 감사기간 : 2021. 8. 13.(금) ~ 8. 24.(화) 기간 중 7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2명(\* 공익감사단 1명 별도)
- 감사범위 :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업무전반

## □ 감사중점

- 사업 규모 및 시행 시기, 업체선정 방식 등 사업 추진방향 적정 여부
- 사업 추진 절차 및 사전 검토 이행 적정 여부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4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0 (0)	0 (0)	

# □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설치사업」 현황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 10. ~ 계속
  - 구축비용 : 2,262억 원 추정
  - 사업대상 : 중앙버스정류소 389개(32개 노선)
  - 주요시설 : 스크린도어, 냉난방, 공기청정, CCTV, 태양광패널, 열화상카메라 등
- ※ 시범설치 정류소(7개 정류소, 10개소)

구 분	중앙차로정류소(4)				가로변정류소(3)		
위 치	송례문(1)	홍대입구(2)	합정역(2)	공향대로(2)	구피발역(1)	독립문역(1)	건대입구역(1)
준공시기	'21. 8. 31.	'21. 8. 31.	'21. 8. 31.	'21. 10. 30.	'21. 8. 31.		

## ※ 스마트쉼터 개념도



〈 플랫폼 정차위치안내시스템 〉



〈 스크린도어시스템 〉



〈 공기정화시스템 〉

# 10. 서울시 연구분야 출연기관 종합감사

## □ 감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연구분야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기여하고자 실시

## □ 추진 내용

- 감사대상 : 서울연구원, 市 조직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 市 안전총괄과
- 감사기간 : 2021. 4. 19. ~ 5. 21.(기간 중 19일)
- 감사인원 : 공공감사2팀장 등 8명
- 감사범위
  - 서울연구원 : 2017. 1.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 전반
  - 서울기술연구원 : 2018. 1.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 전반

## □ 감사 중점 사항

- 회계, 예산(세출·세입) 편성 및 집행, 물품 관리·운영 적정성
- 인사(복무 등) 관리·운영 및 채용 업무 적정성
- 각종 연구업무(사업) 추진 적정성
- 계약 및 시설 관리·운영 적정성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26	16	-	- (-)	- (-)	- (-)	- (-)	- (-)	18 (16)	-	-	8	- (-)	

## □ 총 평

서울시 연구분야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수행,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연구원은 서울시의 주요 시책 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 기술연구원은 서울시의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기술개발·혁신을 통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다만, 두 기관에서 수행한 일부 업무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등과 달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현재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6건은 조치사항 이행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음.

# 11.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A단체와 B단체의 보조금 운영·관리 및 규정 준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육단체의 투명성·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함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A단체, B단체
  - ※ 지도·감독부서 : 市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올림픽추진과
- 감사기간 : 2021. 4. 29.~ 6. 7.(20일간)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6명(공익감사단 4명 포함)
- 감사범위 : 2016. 1. 1.부터 처리한 업무

## □ 감사중점

-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
- B단체 보조금 신청·집행 현황 집중점검
- B단체에 대한 관리(지도·감독 등) 적정 여부
- A단체 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내부 규정 준수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sup>4)</sup>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9	2	0	0 (0)	0 (0)	0 (0)	0 (0)	0 (0)	4 (2)	0	1	4	0 (0)	0 (0)	

4)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 □ 총 평

-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보조금 정산관리 미흡, 보조사업 운영 부적정, 예산편성 부적정, B단체 규정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총 9건 확인되었음.
  
- 보조금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 B단체는 A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우선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후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보전 처리하거나,
  - 보조금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시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변경 사용함.
  - 또한, B단체는 보조사업계획 상 자부담하기로 한 경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충당하거나,
  - 사업결과보고를 집행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에도 A단체는 이를 정산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아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함.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 A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부사업, 편성·통계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공통경비 지급단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함.
  
- 지도·감독 분야에서는
  - A단체는 B단체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관」 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B단체의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의회·지적 분야에서는

- 시 체육정책과에서는 ‘○○○ 혁신 TF’를 구성하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A단체에 통보하였으나, A단체는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요구 사항을 미처리하는 등 이행을 소홀히 함.

보조금 관련 분야는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또는 보조금 사용 업무처리 지침 누락 등에 따른 정산관리 업무 소홀 등이며 이는 시 주관 부서와 A단체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음을 보여줌.

따라서, 시 주관 부서와 A단체는 매년 진행하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관 체육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A단체는 B단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원 종목단체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12.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조사

### □ 조사배경 및 목적

- '15년 사회주택 사업 추진 이후 그동안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한 사업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론 및 시의회의 지속적인 부정적 보도<sup>5)</sup>,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감사위원회는 사회주택 사업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1.7.12. ~7.23. 기간 중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 주요 지적사항〉

- ① 사업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주택 공급실적 부진
  - ② 입주자 임차보증금 보호 취약
  - ③ 달성이 힘든 사회주택 공급목표 설정 및 실적 과다산정 등
- 점검결과는 '21.8.5. 사회주택사업 소관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 하여 '22년 예산 반영 및 사회주택 사업별 재구조화를 권고하였으며,
  - 이후에도 사회주택의 주택공급 효과 및 입주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영세한 사회주택 사업자로 인한 우려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논란되어, 감사위원회는 주관부서의 감사요청에 따라, '21.9.3. ~9.29. 기간 조사를 추진하였음.
  - 특히 본 조사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와 사업자·입주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살펴,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기여하고자 함.

5) ('19.3.8. 한국경제) 시세 80% 취약계층 위한다는 사회주택, 달동네로 떠밀린 깡통주택만 속출 /  
( '19.3.9. 한국경제) 시행사 부실에 임대료도 못 올려,..사회주택 곳곳 난맥상  
- A업체 자금난 공사 중단, 사회투자기금 7억 미상환 / 사회투자기금 받은 사회주택 업체 16개 중 13개가 상환유예  
- 주변시세 80% 임대료 사업성 떨어져, 업체부실로 사회투자기금 손실 불가피  
( '21.6.21. 주간조선) ○○동 꼭대기 사회주택 어찌나... 골칫거리된 박원순 유산  
- 서울시 사회주택 20%는 빈방, 경영난으로 보증금 환급거부, 세입자 피해발생  
- 도시재생 1호 ○○동 사회주택은 안전문제와 주변민원으로 4년 넘게 방치  
- 접근성 떨어지는 위치 사회주택 계획 의문,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 감사 착수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균형발전본부(주거환경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사회적경제담당관), SH공사
- 조사기간 : 2021. 9. 3.(금) ~ 9. 29(수) (기간 중 16일간)
- 조사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6명
- 조사범위 : 사회주택사업 최초 시작부터 현재까지 업무 전반

## □ 조사중점

- 최초 사회주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확인
- 향후 사회주택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 검토
-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 선정 적정성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 해지과정 적정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7	1	0	0 (0)	0 (0)	0 (0)			3 (1)	0	0	14	0 (0)	0 (0)	

※ 현지조치 1건

# 13. 청년활력공간 운영실태 점검

##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미래청년기획단(청년공간사업),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12개소
- 점검기간 : 2021. 8. 31.(화) ~ 9. 30.(목)
- 점검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5명
- 점검범위 : 청년활력 사업 운영 전반

## □ 점검중점

- 각 사업별 최초 사업계획으로부터 방침 수립·변경 과정상의 적정성 여부
- 특정인(단체)과의 반복적 민간위탁·계약·특혜 등 불공정 행위 여부
- 청년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공간별 이용현황 및 예산 낭비 여부
- 청년활력 프로그램·각종 용역 등의 운영 적정성 및 특혜 여부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21	-	2 (10,158)	-	-	2	2 (10,158)	-	-	7	-	-	12	-	-

# 14. 체육시설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체육시설 및 보도정비 건설공사 등의 안전 위해요인 사전제거
- 시설물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중구
- 감사기간 : 2021. 3. 29. ~ 4. 26.(기간 중 18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관리중인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물(13개소) 유지관리실태 및 '18년 이후 준공 또는 계약 시행된 (시비)건설공사·용역 등

## □ 감사중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적정성(시설물안전법 등)
- (시비)건설공사·용역 등의 설계, 시공, 하자, 품질관리 적정 여부
- 방재 및 소방시설, 기전시설, 환기시설 등 안전관리 적정성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sup>6)</sup>	신분상 조치인원 <sup>7)</sup>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화수)	감액	기타						
25	15	126		2 (2)	4	2 (88)		2 (38)	7 (13)			12		

6)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7) 조치인원은 징계, 주의, 고발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 15. 태양광 보급사업 특정감사

## □ 감사배경 및 목적

- 최근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별 점검·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감사내용

- 감사대상 : 기후환경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 감사기간
  - 1차 점검 : '21. 7. 5. ~ 7. 21.(안전감사담당관 외 14명)
  - 2차 감사 : '21. 8. 19. ~ 9. 17.(조사담당관 외 8명)
- 감사범위 : '12년~'21년 추진 태양광 보급사업 전반

## □ 조사중점

- 태양광 업체 주요 임원들의 자문위원 활동, 사적 이익 추구 적정성 여부
- 태양광 주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부적정 여부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대량설치 경위
- 업체측의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여부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부서 주의	권고	통보	고발 (업체)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13									3		9	1		
(11)												(11)		

※ 1차 점검 및 2차 감사 결과 총 30건 지적(1차 점검 시 기 처분·조치 : 17건(시정 4, 주의 3, 통보 10))